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91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서동용ㆍ권인숙ㆍ김병욱

김정호 · 박찬대 · 유정주

이동주 · 인재근 · 고영인

홍정민 · 조승래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함.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 결과, 교 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, 보조공학기기,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음. 일례로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 공함.

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서 장애인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.

#### 주요내용

이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교원이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(안 제38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등을 제공할 때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38조(연수와	교재비)	1 • 2	제38조(연수와 교재비) ①・②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	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
			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
			시설 등을 제공할 때 「장애인
			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
			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4조에
			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
			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	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